

의안번호	2203554
의 퇴 인	남인순 의원
회 답 일	2024. 10. 29.
추 계 번호	24C345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20세 및 30세에 도달한 사람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없고, 공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 등에게 생애최초 국민연금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등의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676억원(연평균 335억원) 이상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억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청년에 대한 생애최초 연금보험료의 지원(안 제100조의5)	369	406	453	448	467	1,676	335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00조의5(청년에 대한 생애최초 연금보험료의 지원) 제1항·제2항	20세 또는 30세가 된 사람 중 아래 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해당연령이 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3개월 간 지역가입자로서 해당 월의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고, 국가는 해당 기간동안 연금보험료의 전부를 지원하여야 함 1. 해당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없을 것 2. 해당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을 것 3. 국민연금 적용제외 사유 중 소득없는 배우자,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행방불명자가 아닐 것 4. 30세가 된 사람의 경우 종전에 동 규정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2	안 제100조의5(청년에 대한 생애최초 연금보험료의 지원) 제3항	국가는 안 제100조의5 제2항에 따라 20세 또는 30세가 된 사람 중 3개월 간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그 지원 기간 동안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음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100조의5(청년에 대한 생애최초 연금보험료의 지원) 제1항·제2항	○	○ 2021~2023년의 공적연금 가입자 수 추이 및 2021년 7월~2025년 6월의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 추이 등을 고려하여 추계
2	안 제100조의5(청년에 대한 생애최초 연금보험료의 지원) 제3항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에 따라 정부가 국민연금의 연금보험료(이하 ‘보험료’)를 지원할 경우 해당 지원을 받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가입기간 연장 효과에 따라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평균 수급자 수와 평균 급여액 지출이 증가¹⁾할 가능성이 있으나, 급여액 지출 증가 효과는 보험료를 지원받은 사람이 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한 시점에 나타나므로(추계기간에 미포함) 본 추계서에서 고려하지 않음

□ 안 제100조의5제1항제5호에 따르면, 30세가 된 사람은 종전에 동 개정안 규정에 따라 보험료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개

1) 보험료를 지원받은 사람이 보험료 지원 기간과 본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을 합하여 10년 이상이 되면 노령연금 수급자가 되고, 10년 미만이면 일시금 수급자가 되는데, 두 경우 모두 급여액 지출을 증가시키게 됨

정안 시행 후 처음으로 지원을 받게 되는 20세인 사람이 30세가 되기 전까지의 10년은 20세와 30세 모두에게서 지원 대상자가 발생하나, 그 이후부터는 30세 도달한 거의 모든 사람이 보험료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임²⁾

- 다만, 이는 추계기간 이후에 발생할 일이므로, 본 추계서에서 설정한 추계기간에는 20세와 30세 모두에게서 지원 대상자가 발생

- 동 개정안은 지원 대상자가 20세 또는 30세가 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3개월 간 보험료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출생일이 속하는 달이 11~12월인 사람의 경우 2개 회계연도에 걸쳐 정부 지원을 받게 되지만, 현재 월 단위의 인구추계 자료가 부재하므로 특정 연도에 해당연령에 도달한 사람들은 모두 그 해에 3개월분의 지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 개정안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받는 사람이 지원 기간(3개월) 내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공적연금에 가입하게 될 가능성도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이들의 수를 추계하기 위한 자료가 부재하므로 본 추계에서는 지원 기간 도중에 지원 중단 사례가 없는 것으로 가정
- 국가가 개정안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하는 20세 및 30세의 국민에게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그 내용과 횟수 등을 알 수 없으므로 추계 대상에서 제외
 - 현재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홍보와 노후준비 교육 및 상담 등의 사업을 진행(2024년 예산 16억 2,200만원)하고 있으나, 20세 및 30세 등 청년을 위한 별도의 홍보사업은 없음

2) 개정안 시행 10년 후가 되면, 30세인 사람은 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있거나, ② 공적연금에 가입중이거나, 또는 ③ 과거 20세 때 동 개정안에 따라 보험료 지원을 받은 사람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됨

-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으므로 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
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에 따라 해당 연령 도달 시점까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사
실이 없고, 공적연금³⁾ 가입 중이 아닌 20세 또는 30세에게 기준소득월액
하한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를 지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본 추계서는 2021년부터 2023년의 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
람의 수와 이들의 인구 대비 비율 평균값을 고려하여 대상자 수를 산출
하고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추이를 고려하여 보험료 지원 단가를 산출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산출
- (대상자 수) 2021년부터 2023년의 20세 및 30세에 해당하는 인구와 개
정안이 명시한 지원 제외자 수 추이 등을 고려하여 각 연령 인구 대비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자 비율을 산출하고, 이를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적용하여 추계기간의 대상자 수를 산출
 - 단, 안 제100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르면, 20세 및 30세인 사람 중 공적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노령연금 및 퇴직연금 등)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와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는 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들의 수에 대한 정보가 없고 그 수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본 추계에서는 고려하지 않음
 - － 실제 이들의 수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

3) 본 추계서에서의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가
리킴

- 본 추계서는 국민연금에 현재 가입되어 있지는 않으나 과거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는 사람 수를 활용하여 과거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 수를 추정하였는데, 실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채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나 이들에 대한 정보가 부재하여 본 추계에서는 고려하지 않음

[표 2] 2021~2023년 인구 및 개정안에 명시된 지원 제외자 추이

(단위: 명, %)

구 분	20세			30세		
	2021	2022	2023	2021	2022	2023
인구(A) ¹⁾	581,562	510,158	501,899	704,354	748,197	746,339
(B) 공적연금 가입자 수	128,673	119,616	110,102	611,724	644,946	638,942
국민	124,538	115,841	108,107	554,914	585,767	580,055
공무원	692	652	736	39,959	41,606	41,153
사학	38	14	16	9,607	9,953	9,987
군인	3,405	3,109	1,243	7,196	7,580	7,696
별정우체국	0	0	0	48	40	51
(C) 과거 소득있는 업무 종사자 수(a-b) ²⁾	31,480	28,354	38,560	86,164	80,969	77,104
국민연금 가입이력자 수(a)	32,443	29,159	39,315	119,063	116,889	113,580
타공적연금 가입으로 인한 가입 상실자 수(b)	963	805	755	32,899	35,920	36,476
(D) 국민연금 미가입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수(c-d) ³⁾	12,622	11,111	10,660	3,967	4,381	4,403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수(c)	13,683	12,094	11,563	4,767	5,272	5,404
국민연금 가입 중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수(d)	1,061	983	903	800	891	1,001
(E) 행방불명자 수	1,075	639	619	2,456	1,902	1,795
보험료 지원 대상자 수 (F=A-(B+C+D+E))	407,712	350,438	341,958	43	15,999	24,095
인구 대비 대상자 수 비율 (F/A)	70.1	68.7	68.1	0.01	2.1	3.2
(2021~2023년 평균) ⁴⁾	(69.0)			(2.3)		

주: 1) 인구는 통계청의 인구총조사 자료를 활용

2) 과거 소득있는 업무 종사자 수는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으나 해당 시점에 국민연금 가입 상태가 아닌 사람을 대리변수로 하여 산출하되, 타공적연금 가입으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이 상실된 사람은 현재 직역연금에 가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들은 제외

3) 생계·의료 수급자는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이 면제되나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 중 본인이 원할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음. 이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수에서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을 제외한 수치를 사용

4) 2021~2023년 평균은 산술평균을 사용하였고, 대상자 수 추계시 소숫점 첫째자리 미만을 절사하여 적용

자료: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 및 통계청 인구총조사,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

- (지원 단가) 2021년 7월~2024년 6월의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의 연평균 증가율에 따라 추계기간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이 변동된다고 가정한 후, 보험료율 9%를 적용하여 보험료 지원 단가를 산출
- 현재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천원 단위 미만을 절사하여 적용하고 있으므로, 2021년 7월~2024년 6월의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의 연평균 증가율에 따라 산출된 추계기간의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역시 천원 단위 미만을 절사하여 적용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특정연도 7월부터 차년도 6월까지의 기간마다 변경되므로, 이러한 기간을 적용하여 기준소득월액 하한을 추계하되 추가재정소요 산출 시 매년 연간 1/2분기와 2/2분기 기준소득월액 추계치의 평균값을 적용

[표 3]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 추이

(단위: 원, %)

적용기간	2021.7. ~2022.6.	2022.7. ~2023.6.	2023.7. ~2024.6.	2024.7. ~2025.6.	연평균 증가율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330,000	350,000	370,000	390,000	5.7

자료: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추계결과,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676억원 (연평균 335억원)으로 추계됨

[표 4] 20세 및 30세 보험료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지원 대상자 수(명, A)	합 계	323,005	335,724	354,680	330,831	326,405	—	—
	20세	309,813	322,897	342,100	318,845	314,264	—	—
	30세	13,192	12,827	12,580	11,986	12,141	—	—
월 지원 단가(원, B) (평균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 보험료율 9%)		38,115	40,275	42,615	45,090	47,655	—	—
지원 개월 수(개월, C)		3	3	3	3	3	—	—
추가재정소요 (억원, A×B×C)		369	406	453	448	467	1,676	33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비용추계서는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김우림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우림	02-6788-3738	wrkim@assembly.go.kr